

건설현장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형석
법무법인(유한)정률
변호사

1. 개 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시행된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3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많은 사건들이 현재 노동청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현재까지 그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이중처벌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검찰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의 요건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가 계속발생하자 위와 같은 재해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 및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에 더하여 대표이사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통하여 각 기업이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¹⁾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 중대재해의 종류 및 책임주체

가. 중대재해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1)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해설집, 2021. 11.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나. 책임주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4. 안전, 보건 확보의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필요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관련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사업주 등이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나.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미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 규정에 따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중대산업재해) |
| 양벌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미발생 :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 |
| 징벌적 손해배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 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 |

5.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판결 사례를 통한 동향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중 12건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이 나머지 1건은 실형의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위 판결들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관련하여 ①해당 법인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마련(3호)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에 관한 조치(5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 | 판결내용 | 특이사항 |
|----|--|---|
| 1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인 : 벌금 3천만원 | 대표이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대표보다 더 중하게 처벌됨 |
| 2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실형 법인 : 벌금 1억 원 |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겸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중의 책임 부담. 동종 전과 고려하여 실형. 안전점검 후 해당 설비의 결함방치, 안전교육 흠결 |
| 3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 벌금 5천만원 | |
| 4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5천만원 | |
| 5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인 : 벌금 2천만원 | |

| | 판결내용 | 특이사항 |
|-----|--|---------------------------------|
| 6번 | 대표이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3천만원 | 피해자의 건강상태 고려 |
| 7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법인 : 벌금 8천만원 | |
| 8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 벌금 2천만원 | |
| 9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7천만원 | |
| 10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8천만원 | |
| 11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5천만원 | 다단계 인과관계 실시 |
| 12번 | 대표이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인 : 벌금 5천만원 | 다단계 인과관계 실시 피해자의 과실을 양형에 고려함 |
| 13번 |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5천만원 | |

특히 실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무위반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의 인정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소가 된 사건 중 상당한 사건이 무죄 선고가 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소된 전체 사건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점은 재판부가 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해석을 하여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가 단 한건도 없으며,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 표 중 11번 판결 및 12번 판결에서는 다단계 인과관계를 통하여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2단계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1단계, 직접적 인과관계>는 구조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판결에서는 위 판시와 동일하게 다단계 인과관계의 법리를 통하여 인과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양형 관련하여 유족 측의 처벌불원의 의사(합의 등)가 가장 형량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 외 피고인의 반성,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대응방안 및 전망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단체 9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고의범에 준할 정도로 과도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구성요건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 바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법원의 법 적용 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각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과관계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연결하는 ‘다단계적 인과관계’의 법리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립된 판시 내용을 기초로 각 사업장에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대부분의 판결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5호)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체크하고 점검한 후 이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의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활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 의무위반이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가 종종 있는바 해당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위 내용을 적극 어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조금 지났다. 시행 당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법의 시행 이후 실제로 중대 재해가 줄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도 아직 명확히 나온바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현장이건 의도치 않은 사고 발생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등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